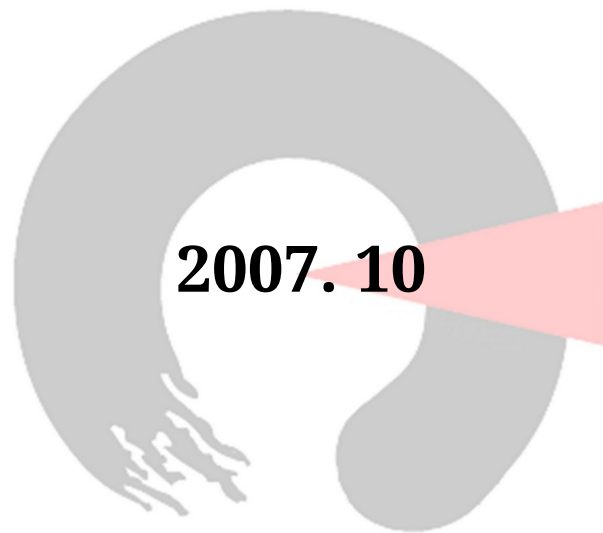


# 제 4 차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주요내용



특 허 청

## 1. 개 요

---

---

### □ 일시 및 장소

- 2007. 10. 17(수) 14:00 ~ 16:00, 특허청 서울사무소 국제회의장(19 층)

### □ 참석자

-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12 명)
- 청장,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담당 본부장 및 팀장
  - 경영혁신홍보본부장, 산업재산정책본부장, 정보기획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 전기전자심사본부장,
    - 혁신기획팀장, 산업재산정책팀장, 특허심사정책팀장, 정보협력팀장, 고객서비스팀장, 심판행정팀장 및 정부업무평가 담당실무자

### □ 주요내용 및 발표자

- '07년 정부업무평가 대비 3/4분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보고 : 6개 전략목표별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보고
    - 혁신기획팀장, 산업재산정책팀장, 특허심사정책팀장, 정보협력팀장, 고객서비스팀장,
  - 자체평가위원 검토의견 수렴 및 질의사항 토의
- 
-

## II. 주요 내용

위원	주요 내용	비고
이동근	<p>o 3/4 분기에도 특허청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잘하셨다고 생각됨. 기업입장에서 눈에 띄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음. 특허심사처리가 10 개월 이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특허동향조사사업은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공계 대학 특허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 확대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임.</p> <p>=&gt; 금년도 1,2 학기에 걸쳐서 총 42 개 대학(원)[38 개 학부, 4 개 대학원]에 특허과목이 설치되어 있음.</p> <p>o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는 금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는 내년 1 월 1 일부터 시범실시된다고 적어주셨는데,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음.</p> <p>=&gt;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빨리 제공하도록 하겠음.</p> <p>o 권리유지료를 인하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느껴짐. 미국에서는 연속출원 횟수와 청구항 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2007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업의 입장에서 일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분별한 특허를 사전에 걸러내어 특허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지며, 특허제도를 순기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미국특허청의 이러한 심사품질 제고 및 특허정보활용강화를 위한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음.</p> <p>=&gt;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미국의 특허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우리의 현 실정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중심으로 벤치마킹할 것임.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제도도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서 받아들여도록 하겠음. 우리가 금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며</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이 제도는 미국에도 없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임.</p> <p>○ 해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언어문제도 많고, 담당 인력도 부족하므로 중국 파견 주재관 등을 통한 중국특허 관련 정보제공, 관련 DB의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p> <p>=&gt; 우리청에서 다국어 자동번역기를 개발하여 한-영 자동번역기는 90%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향후 중국어와 관련해서도 자동번역기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p>	
박해육	<p>○ 보내주신 3/4 분기 실적자료를 보니 특허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느껴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림.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내주신 계획대비 실적자료의 비고란을 보니 상반기에 완료된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혹시 달성하기 쉬운 과제들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 같음. 혹시 과제가 시기적으로는 완료되었다 해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상추진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임. 교육훈련도 마찬가지로 4/4 분기까지 추진하는 것이 있을 것임.</p> <p>=&gt; 1 월이나 2 월 달성률이 높은 이유는 본부별 경쟁이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표현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임.</p> <p>○ 심사품질과 관련하여 볼 때, 심사 난이도 지수의 경우 심사업무도 담당업무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음.</p> <p>=&gt; 심사난이도의 경우는 바로 업무난이도를 다르게 표현한 것임을 알려드림.</p> <p>○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위조상품단속 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의 경우 행사부 교육, 정부부처 교육과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됨.</p> <p>=&gt;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p> <p>○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람.</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gt; 한국어가 PCT 공개어로 채택된 것은 출원인의 경우 출원, 보정, 의견서를 한국어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청 심사관의 입장에서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도 국어로 해줄 수 있어 보다 심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임.</p>	
조은경	<p>o 특허기술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우수특허제품 판로지원 사업에서 국내 대형 쇼핑몰과의 업무제휴 대상제품이 되려면 특허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추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접촉해도 되는지 궁금함. 또한, 입점이 되면 입점 건수로만 실적을 평가하는 것인지도 궁금함.</p> <p>=&gt; 국내 대형 쇼핑몰과의 업무제휴 대상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록을 받고 발명진흥회가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허상품 전문인터넷 쇼핑몰인 “바이인벤션”에 등록된 이후 일정요건의 심사를 거쳐 가능합니다.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수특허제품 쇼핑몰 판매액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으며, 금년에 이미 3/4 분기에 계획했던 실적의 100%를 달성하였음.</p> <p>o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공식채택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함.</p> <p>=&gt;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어가 PCT 공개어로 채택된 것은 출원인의 경우 출원, 보정, 의견서를 한국어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청 심사관의 입장에서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도 국어로 해줄 수 있어 보다 심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임.</p> <p>o 외국 지재권 침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된 것을 어떻게 대응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p> <p>=&gt;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침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음. 다만, 중국 정부에 대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있음.</p> <p>o 고객서비스 감동을 위한 연차등록료 인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개인의 경우 몇 건만 등록해도 연차료가 3 년만 지나면 매우 커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시고 수수료 인하를 대폭 해주셨으면 함.</p> <p>=&gt; 연차료의 경우 내년에 평균 10%를 인하할 계획임.</p> <p>o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WIPO 의 IP 파노라마 등과 같이 유용한 자료가 실려있는 사이트를 링크해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음.</p> <p>=&gt;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WIPO 의 IP 파노라마 등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특허청 홈페이지와 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및 WIPO 홈페이지가 연계되어 있어 이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더 많은 유용한 자료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황준욱	<p>o 특허청은 그 어느 부처보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며, 정보화나 학습조직 등 분야에서 그 성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함. 다만, 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지식, R&amp;D, 창조 등 책임과 사회적 변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직 그 결과가 기대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됨. 그 이유는 이 자리가 평가를 위한 지표들에 맞춰진 실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됨. 실례로 심사교육만족도와 같은 지표로는 실제 업무능력의 향상 민원 불만족 감소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임. 그러나 특허청은 이러한 부분도 스스로 측정할 역량이 있는 조직이라 생각함.</p> <p>=&gt; 자체평가시스템은 전부처를 공통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다만,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반영하여, 우리가 그러한 지표들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o 심사처리기간의 편차를 관리하고 또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분야별로 심사처리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6 시그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POSCO 에서 POSCO WAY 와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허청 정도면 특허청에 맞는 방법으로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특허청 업무방식이 이제는 지식과 R&amp;D 를 넘어서 창의성, 창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 프론티어인 특허청이라면</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지식을 넘어 창조와 창의로 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p> <p>=&gt;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특허청에서는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심사처리 분야나 심사관별 처리기간 편차도 관리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평균개념의 심사처리기간만이 아니라, 개별 출원에 대한 처리기간의 편차를 감소시켜 고객감동의 특허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주셨으면 함. 아울러 특허청에서는 이미 KIPO Way 라는 명칭으로 직원들이 공감하는 핵심가치(고객 최우선, 신뢰와 존중, 도전과 창의)를 내재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p>	
강은숙	<p>o 먼저 선도부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음. 보내주신 자료에서 “방식심사”와 “특허심사제출 유예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함.</p> <p>=&gt; 방식심사란 서류(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실체심사와 구별됨.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는 출원시에 권리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도입한 제도임.</p> <p>o 신속한 심사.심판서비스 과제와 관련하여 볼 때, 심사분야에서는 목표를 100% 달성한 수준이나, 심판분야의 경우 3/4 분기에 68% 정도의 목표달성에 그치고 있음. 과도하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하게 됨. 과도하게 도전적인 목표라면 목표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음.</p> <p>=&gt; 심판처리기간의 경우 68% 정도 목표달성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우려하고 계신데, 청에서 심사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에 따라 심사처리건수가 급증하였고, 이에 불복하는 건수도 늘게 되었음. 이에 따라 3/4 분기까지는 심판처리기간이 다소 목표수준에 못 미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p> <p>o 지역지식재산센터가 31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센터들은 특허청의 산하기관인지 소속기관인지 알려주셨으면 하며,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함. 또한, 12 월에 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여 활용하는지</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궁금함.</p> <p>=&gt; 지역지식재산센터(전국적으로 31 개)의 사업추진체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청이 사업운영기관인 지역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등과 업무 제휴하여 동센터에 대해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동센터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 점검은 발명진흥회가 연 2 회 센터의 추진실적을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상담도 해 주고,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단순히 컨설팅 건수로 실적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실적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p> <p>o 특허기술사업화협회의 사업화 자금지원 규모가 크데, 실제 이만한 효과가 있는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함.</p> <p>=&gt; 각 사업화자금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금년 1 월 조사결과 수혜자의 만족도가 68%가 나왔는데, 사업화협회 참여기관에 피드백하여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o 핵심가치와 GWP 모두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직장 프로그램과의 관계가 어떤 것과 연계되는지 궁금함.</p> <p>=&gt; ‘신뢰와 존중’과 같은 핵심가치의 내재화는 우리청에서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혁신문화의 내재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가족직장 프로그램은 전 정부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양자 모두 혁신을 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환경 및 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성태경	<p>o 주요정책과제 28 개 과제를 살펴보니, 전략목표별로 분야별 과제가 섞여있어 전체 프레임이 다소 산만한 듯 느껴짐.</p> <p>=&gt; 국조실 지침에 따라 분기별 점검의 경우에는 자체평가 5 개 분야(주요정책과제, 일반재정, 정보화, 인사 및 조직) 중 주요정책과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금년에는 5 개 분야 42 개 과제가 자체평가 대상이며, 그 가운데 주요정책과제는 28 개 과제로</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o 최근 대학조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음.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333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대학의 지식재산창출역량 강화 등의 사업과 관련해서 산학협력단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내용이 잘 나타나있지 않으며, 최근 산자부에서 기술경영(MOT:Management Of Technology)과 관련 4 개 대학(서울대, 성균관대, POSCO, 한국기술교육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의 관계 등도 잘 나타나 있지 않음.</p> <p>=&gt; 향후 자료작성시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p>	
이경란	<p>o 특허청의 가장 고유업무이자 핵심적인 업무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0 개월 유지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간 심사정보공유시스템 설치는 정말 잘하신 사업으로 생각됨. 현재 고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객중심적인 정책과 성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최근 미국특허청의 현황 등에 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음. 미국 특허청은 특허출원 및 심사과정에 관련된 자가 당해 출원의 특허성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도를 도입했으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임료만 상승한 것이 아닌가 하며, 오히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미국특허청의 이른바 25 rule 도 사실상 심사업무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됨. 또한, 미국은 심사관이 매우 부족하여 워싱턴 근교 공과대생을 위주로 신규심사관을 모집하고 인센티브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들의 이직률이 높은 관계로 한국특허청의 심사품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p> <p>=&gt;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니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고객감동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우리청은 무분별하게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의 제도 가운데서도 고객중심의 제도를 중심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임.</p> <p>o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 우리 이공계 교수님들의 경우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비교적 가볍게 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특허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특허성으로 평가하는 사업은 연구에 따른 다른 성과에 비해 특허성도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높이 평가받을 만한 사업임.</p>	
이혜영	<p>o 3/4 분기까지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이 약 75%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대부분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일부 과제의 경우 이미 초과달성 하신 것도 많이 볼 수 있음. 다만,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심판처리기간, 특허기술사업화지원, 기술정보홍보 등의 경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여주셨으면 함.</p> <p>=&gt; 위원님 지적대로 다소 미진한 부분을 나머지 4/4 분기 동안중점 보완하기 위한 달성방안을 검토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p> <p>o 4/4 분기 최종평가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질적이면서 내용적인 성과를 고민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산출지표인데, 물론 이러한 산출지표를 도출하기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사업의 추진이 어떤 효과 (outcome)로 이어지고 있는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음.</p> <p>=&gt;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p>	
남상조	<p>o 현재까지 추진실적 가운데 '07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과제들을 여럿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법령개정 과제의 경우 외부요인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됨.</p> <p>=&gt; 국회일정은 외생변수이나, 계획한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p> <p>o 주요정책 가운데 관심있게 보는 내용이 특허넷시스템 고도화사업임.</p>	

위원	주요 내용	비고
	<p>이미 특허넷 II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보화시스템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차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준비에 착수해야 함. 특허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서비스 기반이자 엔진인 DB 와 관련하여 볼 때 통합 DB 구축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 할 사업임. 다만,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데 예산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듯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을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하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차세대로 구축하면 좋겠음. 이와 관련하여 '08 년 12 월 고도화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을 통합 DB 의 구축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음. 시스템도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차세대를 지향할 수 있었으면 함. 심사용 검색엔진의 경우에도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DB 만 검색할 수 있는 엔진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ACM 등 학술 DB 나 상용서비스 DB 들도 같이 제공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이를 메타 검색엔진으로 발전시켜 데이터 마이닝 등도 서비스하는 등 기존의 Pull 서비스 외에 Push 서비스의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p> <p>=&gt;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청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ISP 가 종료되고, 2009 년부터는 예산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차세대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것임.</p> <p>o 출원시스템도 이제는 추세에 맞게 Web 출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인트라넷을 통해 인증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어디서든지 진행상황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X.25 방식으로 대리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 대한 연구를 변리사들과 함께 진행해서 장·단점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음.</p> <p>=&gt; 금년 11 월부터 Web 기반 전자출원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임.</p>	
정연도	<p>o 평가보고서 체계를 보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으로</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구성되어 있는데, 목표체계도에 사용되는 용어 등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됨.</p> <p>=&gt; '06년부터 전부처 공통으로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작성 양식이 통일되어 작성되고 있어, 우리청 독자적으로 그러한 양식이나 체계를 변경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특히, 새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성과관리전략 및 시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p> <p>o 추진과제별 목표달성도 등 전략체계를 통해 특허청 업무를 살펴보면, 신속.정확한 심사, 공정한 심판, 편리한 정보시스템 지원하에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POSCO의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임직원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한 POSCO Way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허청도 KIPO Way 등의 명칭을 붙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혁신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음.</p> <p>=&gt; 특허청도 이미 KIPO Way라는 명칭으로 직원들이 공감하는 핵심가치 내재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조현래	<p>o 특허청은 고유업무인 심사.심판 외에도 대학과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추진해주고 있어서 대학측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하나의 예로 WIPO, 발명진흥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내대학의 지재권 교과과정 등에 학생들이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에 대해 학생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음.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R&amp;D 연구기획시 특허동향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연구자들이 연구기획시나 과제선정시 자기 분야는 자기가 스스로 특허동향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함.</p> <p>=&gt;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50%가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들의 경우 특허동향조사와 관련하여 경험도 없으므로, 능력이 배양될 때까지는 당분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동향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 특허정보검색이나 활용과 같은 정보화분야의 사업, 예를 들어 대학특허맵 지원사업 등을 산업재산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함.</p> <p>=&gt; 특허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창출 기반의 강화라는 전략목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사업은 정보기획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p> <p>○ R&amp;D 특허센터 운영, 어드바이저 운영 등은 대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과 연대하여 진행하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특히, 매년 성과평가를 철저히 시행하여 성과가 부진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평가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p> <p>=&gt; 우리청에서는 현재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R&amp;D 특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요청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p> <p>○ 특허정보검색 등 활용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특허청 홈페이지에 약간 실려있기는 하나, 심층사례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느껴짐. 실패, 성공사례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p> <p>=&gt; 성공·실패사례 등 추가정보를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음</p>	
신 열	<p>○ 특허청의 경우 대부분의 성과지표를 보면 결과지표보다 산출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결과지표를 더욱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p> <p>=&gt; 우리청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Input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나, 평가 등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결과지표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해왔음.</p> <p>○ 청 규모에 비해 과제 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됨. 어떤 과제의 경우 연초에 다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면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런 과제들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음.</p>	

위 원	주요 내용	비 고
	<p>=&gt; 월별 추진실적의 개념으로 개별 단위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 그러한 점을 문제로 보신 것 같음. '08년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p> <p>o 6개 영역으로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지표를 설계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한 예로 첫 번째 전략목표의 경우 2, 3번 과제가 연결고리가 있다면 3번 과제가 2번 과제보다 앞에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됨.</p> <p>=&gt; 성과목표 선정후 순서 배열시 심사.심판서비스의 신속.고품질 서비스의 제공을 심사.심판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보고 그렇게 배열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p> <p>o 만족도를 결과지표로 일부 활용하고 계신데, 만족도 지수를 80점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 향후 2~3년 후를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p> <p>=&gt; 향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p> <p>o 3/4분기 실적보고서의 경우 실적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필요사항을 더욱 상세하게 도출해야 할 것임.</p> <p>=&gt; '07년 연말까지 중점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음.</p>	